

사회복지정책론

제 10장 공공부조

공공부조의 개념

- 공공부조:
- 국가가 규정하는 일정한 수준 이하에서 경제적으로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고,
- 자신의 능력으로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 부양의무자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는 자를 신청에 근거하여 자산조사와 생애조사를 실시한 후,
- 수급권자로 판명되면 이들에 대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급여를 제공해 주고,
- 자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이들의 자립자활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원조를 제공해 주거나 근로와 연계하여 원조를 제공하는 제도

2. 공공부조의 원리

- 가. 생존권보장의 원리
- 나. 국가책임의 원리
- 다. 최저생활보상의 원리
- 라. 보충성의 원리(개인의 자산을 우선, 부조는 보충)
- 마. 자립조장의 원리
- 바. 무차별평등의 원리

3. 공공부조 실시상의 원칙

- 가. 신청보호의 원칙(신청에 의해 이루어짐 → 국민의 권리)
- 나. 급여기준과 정도의 원칙(과유불급)
- 다. 개별적 요구충족의 원칙(대상자 각각의 요구)
- 라. 세대단위의 원칙(세대를 단위로 생활능력 심사)
- 마. 현금급여의 원칙(급여 대상자의 자유 보장)
- 바. 거택보호의 원칙(공공부조는 생활근거지인 자신의 주거에서 행하는 것을 원칙)

4. 우리나라 공공부조 관련 역사(1)

- 가. 일제강점기

- 유사시에 은전을 베푸는 형태로 극히 한정된 범위의 요구호자 구빈사업

- 나. 미군정기

- 미군정 법령에 의해 피난민, 해외에서 귀환한 전재민 등에 대해 외국 민간 원조단체의 도움으로 구호사업을 실시

- 다. 정부수립과 한국전쟁기(1950년대 전후)

- 외형적으로는 외국 원조단체의 자선구호활동, 전문사회사업교육기관의 설치, 각종 복지직능단체의 발생 등 민간사회 사업 활발
-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은 응급구호사업이 중심, 행정상으로도 일제와 미군정의 사회복지정책 틀을 벗어나지 못함

4. 우리나라 공공부조 관련 역사(2)

- 라. 1960년대(5.16군사쿠데타와 제3공화국)
 - 1961년 생활보호법과 재해구호법이 제정되었으나, 보호수준은 미흡
 - 경제발전 → 사회복지정책 미군정 방식 탈피
 - 외형적인 기초를 설립하였으나, 시행 측면에서는 미흡

- 마. 1970년대(제4공화국)
 - 1977년 아산복지재단이 설립, 보건의료, 사회복지사업 등의 역할
 - 1970년 말에 이르러 서울대, 중앙대에서 사회사업학과 → 사회복지학과

- 바. 1980년대(제5.6공화국)
 - 사회복지정책은 주요 정치현안 → 1980년대 후반 한국형 복지도형론
 - 1989년 사회복지관의 설치와 운영규정 → 영구임대 아파트
 -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학교법인 등이 사회복지관의 위탁운영에 관심

- 사. 1990년대 이후
 - 1995년 초에 와서야 성장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삶의 질과 생산적인 국민 복지에 대한 관심을 강조

4. 우리나라 공공부조 관련 역사(3)

- 문민정부 이후 국민의 정부에 걸친 사회복지제도의 획기적인 변화는
- 첫째, 사회보험제도의 정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제도의 확대 실시(1998), 전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제도의 적용, 의료보험의 통합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출발
- 둘째, 공공부조제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는 특정 인구학적 범주에 국한된 대상자에게만 급여가 제공되는 범주적 공공부조여서 빈곤에 처한 **모든 사람의 생존을 보장**하는 **일반적 공공부조로 전환**함으로써 모든 빈곤계층을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변화를 가져오게 됨
- 따라서,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국민들도 장기실업 등으로 인해 절대적 빈곤 상태에 빠진 경우 이들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정

5. 공공부조의 종류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족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되어 국가에서 주는 급여를 수급

- 나. 기초의료보장제도

-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경제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을 대상
- 정부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조제도

- 다. 긴급복지지원제도

- 가구의 주소득자가 사망,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생계 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에 지원
-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하여 생계, 의료, 주거비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

구분기준	긴급복지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업무성격	• 위기상황에 대한 개별적 대응	• 빈곤계층에 대한 전반적 대응
의도목적	• 삶-희망부여와 고취	• 빈곤탈피와 생활안정
대상체계	• 차상위계층까지 포괄 및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빈곤선 이하 및 부양의무자 기준
대상자성격	• 일시적 빈곤 및 빈곤정책의 사각지대	• 만성적 빈곤
급여체계	• 필요한 자원탄력대응	• 7종 급여
선정, 지원체계	• 신속한 대응(8시간/3일)	• 민원처리기간(2주)
주종관계	• 기존 사회안전망의 종속적 위치	• 대상확대 및 지원 내실화 필요

■ 긴급복지지원제도 :

- 가구의 주소득자가 사망,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였거나, 가구구성원이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거나, 화재로 주거를 상실하는 등의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저소득층을 생계, 의료, 주거비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응급복지지원제도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

구분	공공부조	사회보험
목적	사후적 대응	사전적 대응
이념	선별주의	보편주의
원리	무차별평등(평등주의)	비례원리 강조(형평주의)
대상	소수의 빈곤계층	국민 전체
자격요건	자산조사	기여금 등
재원	일반조세	보험료
급여수준	사회적 최소한	적정선
수급권의 성격	권리성 약함	권리성 강함



감사합니다